

다. 병결 확인서(나이스학부모서비스)

- 1) 병명 결석 / 지각 / 조퇴의 경우 : 5일 이내에 의사고견서,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확인서 제출
  - 2) 병결확인서 작성 시 학생, 학부모 반드시 날인하도록 함. 날짜 등 내용 확인 철저
- ※ 칼라프린트를 활용하여 위조하는 학생 있으니 검토 충분히 하실 것.

**\*학업성적관리규정 중(일부)**

1. 결석 처리

가. 학칙에 의하여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2. 출석 처리

1)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출석인정결석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 ㉠ 지각,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병역 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예 : 재학 중 소년부류신사원에 위탁된 위탁기간과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제1항 제8호)에 의한 소년원의 교육기간(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산입체 피견 현장실습, 산입체 현장체험학습)참가, 혼린 참가,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위탁교육), 교외체험학습 등'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지벌명가 기간 제외)
-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모	1
임양	○ 본인	20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사망	○ 조조부모, 외조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휴무도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학교장 재량 휴업일은 산입)

※ 학교장은 비(학) 이외의 부모 및 조부모의 재혼, 철회, 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 학교폭력에 반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 보호) 제1항의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에 따른 결석
- ㉧ 성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어, 월 1일(단, 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 ㉨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이 병원학교수업참여 및 교육개별기간 내에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 ㉩ 건강장애 선정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이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에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 학교 수업참여 또는 원격수업을 이수하도록 교육장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명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명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3)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기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 등)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 라) 학교폭력에 반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기간

4)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합니다.(반드시 결석계 제출함)

- 가) 부모 및 가족 병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다)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처리
- 1) 지각은 아침조회 시작 시각(08: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2)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3) 결과는 수업시간에 지참(15분이상)하거나 불참, 또는 교육활동등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 NIS상에서 월출결 마감시 반드시 학생들에게 공개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험 및 성적처리**

가. 고사의 구분 및 횟수

- 1) 고사는 정기고사와 수시고사가 있습니다.
- 2) 정기고사는 학기별로 2회(1, 2차 정기시험)씩 연 4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 3) 수시고사는 수행평가 위주로 실시하며 수업시간 중 수시로 평가합니다.